

국외 광물의 범위(제2조제2항 관련)

금광 · 은광 · 동광 · 연광 · 아연광 · 창연광 · 주석광 · 안티몬광 · 수은광 · 철광 · 크롬광 · 티타늄광 · 망간광 · 니켈광 · 텅스텐광 · 인광 · 알루미늄광 · 흑연 · 석탄 · 석유 · 운모 · 석면 · 유황 · 형석 · 석회석(대리석을 포함한다) · 규사 · 규석 · 우라늄광 · 지르코늄광 · 염 · 카리광 · 백금광 · 코발트광 · 몰리브덴광 · 마그네슘광 · 금강석 · 고령토 · 사금 · 사석 · 사철 · 활석 · 희토류광 · 천연석고 · 사문석 · 루비 · 사파이어 · 바륨광 · 규조토 · 리튬 · 인듐 및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물